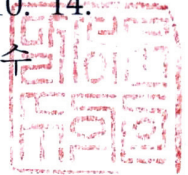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9
----------	------

제출일자: 2019. 10. 14.

제 출 자: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 명확성 제고 및 청문실시를 통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하고,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3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신설
- 나. 제7조(사업의 감독과 정산)제2항 중 “1개월 이내” 를 “2개월 이내” 로 수정
- 다. 제11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3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8. 29. ~ 9. 18.(20일간, 공고일 미산입)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그에 관한 청문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제7조제2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1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한 전통시장이 제11조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2(상인회의 등록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그에 관한 청문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u>
제7조(사업의 감독과 정산) ① (생략) ② 상인회는 군수에게 사업집행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감독과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2개월----- -----
<u><신 설></u>	<u>제11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u> <u>① 군수는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한 전통 시장이 제11조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u>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

3.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